

# 2020년도 제3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2020. 6. 1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I.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총 계	3,281,637	3,211,721	69,916	2.2
일반회계	285,516	285,213	303	0.1
국고보조금	279,490	279,187	303	0.1
주택사업특별회계	2,972,763	2,903,150	69,613	2.4
보 조 금	747,550	610,201	137,349	22.5
지 방 채	759,000	865,000	△106,000	△12.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10,850	872,585	38,265	4.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3,358	23,358	-	-

### 2.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총 계	3,567,670	3,484,800	82,870	2.4
일반회계	746,818	744,477	2,341	0.3
사 업 비	423,653	421,312	2,341	0.6
주택사업특별회계	2,811,315	2,730,787	80,528	2.9
재무활동	366,581	324,681	41,900	12.9
사 업 비	2,441,170	2,401,759	39,411	1.6
예 비 비	810	1,593	△783	△49.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536	9,536	-	-

## Ⅱ.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일반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상향 지원	(x425) 805	(x255) 255	(x170) 550	215.7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1,578	-	1,578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x400) 640	(x267) 427	(x133) 213	49.9	
특별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x318,900) 451,960	(x173,574) 413,549	(x145,326) 38,411	9.3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141,207	140,907	300	0.2%	
	신혼부부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38,309	36,048	2,261	6.3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x1,668) 9,768	(x1,168) 10,936	(x500) △1,168	△10.7	
	청년월세지원	10,697	10,767	△70	△0.7	
	효창5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4,676	5,000	△324	△6.5	
	기타회계 전출금	(국민) 도정→국민	132,500	117,000	15,500	13.2
		(국민) 재촉→국민	218,800	192,500	26,300	13.7
	예비비	(국민계정)	182	388	△206	△53.1
		(도정계정)	247	644	△397	△61.6
(재촉계정)		182	561	△379	△67.6	

## Ⅲ. 검토의견

### 1. 총괄

- '20년 제3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경 세입예산규모는 총 3조 2,816억 3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9억 1천6백만원(2.2%)이 증액된 것이며, 세출 예산규모는 총 3조 5,676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4%에 해당하는 828억 7천만원이 증액된 것임.

- 이번 추경은 포스트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주택건축본부 추경 세출사업 중에는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이에 해당됨. 그 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상향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와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생계의 간접적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 세입 관련

-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경 세입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3억 3백만원(0.1%),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696억 1천3백만원(2.3%) 증액된 3조 2,816억 3천7백만원(2.2%)이며, 이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 등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등에 따른 것임.

회계	사 항 별		추경예산(인)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상향 지원	425	255	170	66.7%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400	267	133	49.8%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양천구 목3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7,257	6,757	500	7.4%
	국고보조금(기금)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318,900	173,574	145,326	83.7%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1,668	1,168	500	42.8%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	6,076	17,618	△11,542	△65.5%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565	-	2,565	-
	지방채(모집공채)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 국비 추가 교부에 지방채 발행분 감액 반영	759,000	865,000	△106,000	△12.3%
	순세계잉여금	(국민계정)	9,258	51,655	△42,397	△82.1%
		(도정계정)	157,849	146,508	11,341	7.7%
		(재촉계정)	1,732	6,812	△5,080	△74.6%
	기타회계전입금	(국민계정)도정계정→국민계정	131,200	117,000	14,200	12.1%
		(국민계정)재촉계정→국민계정	220,200	192,500	27,700	14.4%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재촉계정)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증액	55,500	23,000	32,500	141.3%	

### 3. 세출 관련

- 주택건축본부 소관 '20년 추경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3조 4,848억원) 대비 828억 7천만원(2.4%) 증액된 3조 5,676억 7천만원으로, 추경은 대부분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편성되었으며, 포스트코로나 관련사업 1건과 국비 추가배정에 따른 증·감추경 4건,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불용처리하여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감추경 2건,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증추경으로 구성됨.

(단위 : 백만원)

회계	사 항 별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일반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상향 지원	정부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분 편성	(x425) 805	(x255) 255	(x170) 550	215.7%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SH공사 소유상가 소상공인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1,578	-	1,578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20.3월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추가 사업비 확보	(x400) 640	(x267) 427	(x133) 213	49.9%
특별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시비 145,326백만원 감액	(x318,900) 451,960	(x173,574) 413,549	(x145,326) 38,411	9.3%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300백만원 증액	141,207	140,907	300	0.2%
	신혼부부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금융지원 지원실적 증가에 따른 이차보전액 증가 예상액	38,309	36,048	2,261	6.3%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시설비 국비 교부 예정으로 시비 1,668백만원 감액	(x1,668) 9,768	(x1,168) 10,936	(x500) △1,168	△10.7%
	청년월세지원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감액	10,697	10,767	△70	△0.7%
	효창5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보조금검증위원회 결과에 따라 잔액 발생분 감추경	4,676	5,000	△324	△6.5%
	기타회계 전출금	(국민계정) 도정→국민	131,200	117,000	14,200	12.1%
		(국민계정) 재촉→국민	220,200	192,500	27,700	14.4%
	예비비	(국민계정) 세출조정	182	388	△206	△53.1%
(도정계정) 세출조정		247	644	△397	△61.6%	
(재촉계정) 세출조정		182	561	△379	△67.6%	

-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상향 지원(일반회계)’는 쪽방·고시원·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3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한 이래, 금번 추경은 이와 관련한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편성하기 위한 것임1).

국가 공모사업은 ‘광역형’과 ‘기초형’이 있는데 광역형에 서울시가, 기초형에 강남·양천구가 선정되었으며, 서울시는 광역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복지역량을 갖춘 중구·용산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 지역주거복지센터 5개소에 위탁하였음. 이에 국비·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추가확보하되, 자치구보조와 지역주거복지센터 위탁사업비로 편성함. 참고로 선정된 5개 지역주거복지센터 중 2개소(중구·용산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위탁수행하고 있음.

이에 기초형 사업추진을 위해 강남구와 양천구에 보조금 3천만원, 광역형 사업추진을 위해 SH공사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4천만원, SH 외 민간위탁 사업비 2억 1천만원 등 총 3억 8천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비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정부사업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를 기초로 추후 사업범위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세부 내역
계	(x425,000) 805,000	(x255,000) 255,000	(x170,000) 55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75,000) 105,000	(x45,000) 45,000	(x30,000) 60,000	<b>기초형 사업비</b> ▶양천구 : 2천만원(국비1천, 시비1천)/ 구비(예산외) 1.5천원 ▶강남구 : 4천만원(국비2천, 시비2천)/ 구비(예산외) 3.0천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x140,000) 280,000	(x84,000) 84,000	(x56,000) 196,000	<b>광역형 사업비 (중구·용산 주거복지센터)</b> 98,000천원(국비28,000, 시비70,000) * 2개소
민간위탁금	(x210,000) 420,000	(x126,000) 126,000	(x84,000) 294,000	<b>광역형 사업비 (구로·관악·동작 주거복지센터)</b> 98,000천원(국비28,000, 시비70,000) * 3개소

1) 금년 4월 국토부에서 국비(4억 2천5백만원)의 60%인 2억 5천5백만이 내려와 간주처리 후 사업기관에 기 지급되었으며(기정예산), 금번 추경에는 시비 전액(3억 8천만원)과 국비 잔액(1억 7천만원) 등 총 5억 5천만원을 편성함.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일반회계)’은 코로나19 확산·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SH공사 소유상가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고자 15억 7천8백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으로<sup>2)</sup>,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민생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시급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지원기간 종료 후 코로나 19사태 추이에 따라 추가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1,578	-	1,578	-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일반회계)’은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3월 국비의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sup>3)</sup>을 감안한 추가 사업비 2억 1천3백만원<sup>4)</sup>을 증추경하려는 것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x400) 640	(x267) 427	(x133) 213	49.9%

이와 관련하여 금년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난약자이용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sup>5)</sup>되었고, 작년에 실시된

2) 사업근거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시장방침 제41호, 20.03.02)

3) 국비 1 : 지방비 1(시 70~30% : 구 30~70%) : 자부담 1

※ 지방비는 재정력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 적용

4) ▶ 국 비 : 133,333천원 = 40,000천원 \* 1/3 \* 10동(추가)

▶ 시 비 : 80,000천원 = 40,000천원 \* 1/3 \* 10동(추가) \* 0.6(시비보조율 평균)

※ 공사비: 1개 동 기준 40,000천원

5) 건축물관리법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수요조사(20개소)에 비해 금년 수요 재조사 시 수요가 증가(10개소↑)하게 됨에 따라 보조금을 증액하려는 것임.

-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특별회계)’은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SH공사가 다세대 등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추가확보에 따라 국비를 증액하고 사업예산 중 감소된 만큼의 시비를 감액하고자 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월평균소득 등에 따라 I, II 유형으로 구분되며<sup>6)</sup>, '19년 각 유형별 700호에 대한 국비 1,690억원을 편성하고,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신혼부부 I 유형은 1,500호, 신혼부부 II 유형은 300호를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여 추가공급함으로써, '20년 총 3,200호 공급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계획하였음.

이에 대하여 지난 1월, 총 3,200호에 대한 국비를 모두 확보하게 됨에 따라 교부된 국고보조금 1,453억 2천6백만원 증가분을 추경에 반영하고, 아울러, 금번 국비보조 시 각 유형별 지원단가가 하향 조정되었는 바, 시비는 사업예산 중 감소부분을 서울시와 SH가 50%씩 부담하고자 1,069억 1천9백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국비지원	서울시 추가물량	비고
신혼부부 I	700호 (전액국비) ※ 호당단가 230백만원 (호당단가 차액은 시비편성)	(당초) 1,500호 (시:sh=1:1) ※ 호당단가 249백만원 (추경) 국비보조(호당단가 190백만원으로 감소) ※ 호당단가 300백만원	서울시 추가물량에 대해 국비 보조금이 편성되어 시비감액, (단, 호당단가 차액분 시비 편성)
신혼부부 II	700호 (전액국비) ※ 호당단가 460백만원	(당초) 300호 (시:sh=1:1) ※ 호당단가 460백만원 (추경) 국비보조(호당단가 436백만원으로 감소)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6) 신혼부부 I : 월평균소득 70%이하(맞벌이 90%이하)

·임대기간 : 최장20년(최초 2년, 2년씩 재계약), 임대료 : 시세 50%이하

신혼부부 II : 월평균소득 100%이하(맞벌이 120%이하)

·임대기간 : 최장6년, 자녀출산시 최장10년 (최초 2년, 2년씩 재계약), 임대료 : 시세 80%이하

※ 자산기준('20) : 총자산 288백만원이하,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특별회계)’는 서울시가 매입한 재개발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위해 2,50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12만원씩 SH공사의 자부담금을 지원하고자 3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141,207	140,907	300	0.2%

참고로,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18년 3,733가구, ‘19년 3,413가구에 대해 지원해 왔으나, 작년 말 태양광사업자 비리의혹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년 본예산에 미편성되었다가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음.

- ‘신혼부부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특별회계)’은 ‘20년 전면 확대시행 후 3분기 신청분까지 대출실행실적(16,692호)이 목표실적(10,500호)을 초과달성함에 따라 ‘20년 전망치인 22,500호에 대한 이차보전 예상 부족분 23억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임.

<2020년도 대출금 이차지원 부족예산 산출내역>

<b>편성 124억</b>		<b>집행예정 147억</b>		<b>부족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10,500호, 연2.2%이자지원 = 108억</li> <li>▶ ‘18~’19기한연장, 대환수요 고려 = 16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22,500호, 연1.5%이자지원 = 147억</li> </ul>	=	<b>△ 23억</b>

<최근 대출금 이차지원 집행(예정) 내역>

구 분	집행 예정액	지원건수	산출내역		
			전 체 대출평잔	이자지원 적용일수	평 균 이차지원금리
계	30,248				
2018년	4,240	4,221건	6,249억원	274일	0.91%
2019년	11,317	9,072건	1조 4,446억원	274일	1.05%
2020년 3분기까지 (실적+추계)	14,691	16,692건	2조 7,647억원	(붙임3) 참조	

※ ‘18~’19년 지원건수 : 실행 기준 / ‘20년 지원건수 : 1~4월(실행 기준), 5~9월(추계 기준)



-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특별회계)7)’ 사업 중 ‘공공시설 복합형 서울리츠’는 저밀로 이용 중인 노후 공공시설부지를 활용하여 청년주택과 공공시설·지역 필요시설을 복합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16년 7월 리츠1호 영업인가를 승인 받았으며, ‘20년 예산으로 30억 3천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x1,668) 9,768	(x1,168) 10,936	(x500) △1,168	△10.7%

그러나 금년도 국비가 16억 6천7백만원 교부기로 확정된 가운데, 기 교부된 1차 국비분 11억 6천7백만원을 간주처리하고, 교부 예정인 2차 국비분 5억원을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총 국비 교부액만큼 시비를 감추경(△11억 6천7백만원)하려는 사항임.

- ‘청년월세지원(특별회계)’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로 사회진입과 안정적 주거 정착을 지원하고자 중위소득 120% 이하인 1인 청년 가구에 대해,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 예산은 정보시스템구축(6억 8천9백만원), 지원인력 인건비(1천만원), 월세지원금(10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정보시스템구축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7천만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임.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청년월세지원	10,697	10,767	△70	△0.7%

이는 청년월세 정책이 지난해 10월에 확정·발표됨에 따라 민간위탁 절차이행이 예산편성 전에 이행되지 못하고, 지난 제293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

7) 준공공 임대주택 및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지붕 세대공감, 청년주거포털사이트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시설 복합형 서울리츠 등

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산개발시 불용예상 금액을 미리 감추경하여 민간위탁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됨.

- ‘효창5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특별회계)<sup>8)</sup>’는 효창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검증위원회 (‘20.3.18.) 검증결과에 따라 3억 2천3백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감추경하려는 것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효창5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4,676	5,000	△324	△6.5%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윤 은 정
연 락 처	02-2180-8208
이 메 일	urbanth@seoul.go.kr

8) ▶사업내용 : 효창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도로, 소공원)  
▶집행절차 : 예산편성(시) → 재개발 사업 준공(구)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정산(구→시)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시→구)

# [붙임1]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상향지원

## □ 사업목적

- 쪽방·고시원·여인숙 등 비주택거주자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복지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와 협력하여 이주과정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권 보장

## □ 추진경위

- `20.1월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서울시 설명회 개최(1회)
- `20.2월 : 서울 및 경기권 지자체 상대로 사업설명회 개최(1회), 서울시 및 자치구(2개소)에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
- `20.3월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추진 지자체 선정
  - 서울시 및 자치구(강남·양천구) 선정
- `20.4월 : 지역복지역량을 갖춘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센터(5개소)와 위탁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1.1.~2020.12.31.(1년 운영 평가 후 2년 연장)
- 지원대상 : 5개 중점지원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 쪽방·노후고시원·여인숙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총자산 19,6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사업수행주체 : 5개 주거복지센터, 2개 자치구
  - 주거복지센터 : 중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 자치구 : 양천구, 강남구
- 추진방법 :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지원
- 사업의 주요내용
  - 주거상담 및 대상자 발굴, 주택물색 및 이주지원, 임시거처 운영, 정착지원 및 사례관리, 지역 환경 및 대상자 반영 특화사업 추진, 사업홍보 및 네트워크 협력 등

## [붙임2] 신혼부부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신혼부부 및 청년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부여

### □ 추진경위

- 청년의 주택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016.10.)
  - 서울시-한국주택금융공사-kb국민은행
-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2018.4.)
  - 서울시-한국주택금융공사-kb국민은행
-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약(2019.12.)
-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변경 업무협약 체결(2019.12.)
  - 서울시-한국주택금융공사-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변경 업무협약 체결(2020.2.)
  - 서울시-한국주택금융공사-하나은행

### □ 사업내용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결혼 7년 이내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주택조건 :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90% 이내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
  - 지원금리 및 기간 : 연 최대 3.6% 이차보전, 최장 10년
  - 지원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 국민은행(대출), 서울시(이차보전)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39세 이하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 주택조건 : 관내 전용 60㎡ 이하 보증금 1억9천만원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90% 이내 또는 70백만원 중 적은 금액
  - 지원금리 및 기간 : 연 2% 이차보전, 최장 8년
  - 지원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 국민은행(대출), 서울시(이차보전)

# [붙임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차보전 사업, 2020년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2.28일부터 시행)	
		집행예정액 (지원건수)	산출근거	집행예정액 (지원건수)	산출근거	집행예정액 (지원건수)	산출근거
계	14,691 (16,692 건)	10,383 (11,128 건)		2,880 (3,301)		1,428 (2,263 건)	
1월	1,850 (1,153건)	1,617 (989건)	(대출금액) 1,646억원 (지원금리) 1.42% (적용일수) 256일	233 (164건)	(대출금액) 257억원 (지원금리) 1.39% (적용일수) 248일	-	
2월	3,035 (2,058건)	2,235 (1,486건)	(대출금액) 2,451억원 (지원금리) 1.51% (적용일수) 225일	800 (572건)	(대출금액) 932억원 (지원금리) 1.45% (적용일수) 223일	-	
3월	2,639 (1,999건)	1,977 (1,471건)	(대출금액) 2,429억원 (지원금리) 1.53% (적용일수) 198일	535 (420건)	(대출금액) 692억원 (지원금리) 1.48% (적용일수) 198일	127 (108건)	(대출금액) 173억원 (지원금리) 1.42% (적용일수) 191일
4월	2,105 (1,882건)	1,346 (1,182건)	(대출금액) 1,953억원 (지원금리) 1.54% (적용일수) 167일	385 (345건)	(대출금액) 575억원 (지원금리) 1.48% (적용일수) 167일	374 (355건)	(대출금액) 569억원 (지원금리) 1.48% (적용일수) 166일
5월	1,824 (1,920건)	1,156 (1,200건)	(대출금액) 2,000억원 (지원금리) 1.54% (적용일수) 137일	334 (360건)	(대출금액) 600억원 (지원금리) 1.48% (적용일수) 137일	334 (360건)	(대출금액) 600억원 (지원금리) 1.48% (적용일수) 137일
6월	1,425 (1,920건)	903 (1,200건)	(대출금액) 2,000억원 (지원금리) 1.54% (적용일수) 107일	261 (360건)	(대출금액) 600억원 (지원금리) 1.48% (적용일수) 107일	261 (360건)	(대출금액) 600억원 (지원금리) 1.48% (적용일수) 107일
7월	1,012 (1,920건)	642 (1,200건)	(대출금액) 2,000억원 (지원금리) 1.54% (적용일수) 76일	185 (360건)	(대출금액) 600억원 (지원금리) 1.48% (적용일수) 76일	185 (360건)	(대출금액) 600억원 (지원금리) 1.48% (적용일수) 76일
8월	600 (1,920건)	380 (1,200건)	(대출금액) 2,000억원 (지원금리) 1.54% (적용일수) 45일	110 (360건)	(대출금액) 600억원 (지원금리) 1.48% (적용일수) 45일	110 (360건)	(대출금액) 600억원 (지원금리) 1.48% (적용일수) 45일
9월	201 (1,920건)	127 (1,200건)	(대출금액) 2,000억원 (지원금리) 1.54% (적용일수) 15일	37 (360건)	(대출금액) 600억원 (지원금리) 1.48% (적용일수) 15일	37 (360건)	(대출금액) 600억원 (지원금리) 1.48% (적용일수) 15일

## [붙임4] 청년 월세 지원

### □ 사업목적

- 청년층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로 사회진입 및 삶의 선택지 확대 지원(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

### □ 사업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4조 및 7조
- 서울청년월세지원 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08호 '19.10.30)

### □ 추진경위

- '20년 서울청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추진
  - '19년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청년층의 사업 추진요구(청년청-12630호, '19.9.27)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1월 ~ 2022.12월
  - \* 민간위탁 등 사전절차 이행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1인 가구(만19세~만39세)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직접수행+민간위탁
- 추진방법 : 월 20만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지원) \* 생애 1회 지원
- 사업의 주요내용 : '서울형 청년월세지원 관리시스템 구축' 및 이를 통한 온라인 신청, 월임차료 납입 증빙 후 계좌 입금

## [붙임5]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 □ 사업목적

-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최근 대형 피해 사고는 대부분 기준강화 이전의 건축물에서 발생함에 따라
  - 대형인명피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 필요
- 이에,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20.5.1. 시행 예정)됨에 따라 '20년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보조 근거가 마련되어 피난약자이용시설 등에 지원하고자 함

### □ 추진경위

- 2018. 1. ~ 3. : 30층 미만 근생 및 공동주택 16만동 대상 실태조사 실시(스프링클러,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현황)
- 2019. 3. : 국토부 사업 공고에 따른 사업 신청서 접수(자치구)
- 2019. 4. ~ 10. : 5건 지원 확정 및 교부(의료시설 1건, 노유자시설 3건, 고시원 1건)
- 2020. 1. ~ 12. : 국토부 사업 공고에 따른 사업 접수(연내 상시 접수, 2020.5.15. 현재 19건 접수) 및 홍보 실시
  - 사업 수요 발굴 위한 실태조사 병행 실시(2020.5.1. 「건축물관리법」시행 이후 6개월 이내 소유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임을 통지)
- 2020. 6. ~ 12. : 자치구 사업계획서에 따른 보조금 교부(예정)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 1. ~ 12.
- 지원대상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목욕장
  - 지원조건: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고 간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필로티 건축물(피난약자이용시설의 경우 필로티 여부와 무관)
- 추진방법 : 1개동 총공사비 40백만원 기준 26백만원 지원 (국비:지방비:자부담 = 1:1:1)
- 보강방법 :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 소유자가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을 선택

## [붙임6] 효창5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 □ 사업목적

- 효창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 보조

### □ 사업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3항, 시행령 제79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2조제2항
  -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너비 8m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50%이내 보조 가능
- 기반시설설치비용 보조 업무처리개선(안)(주거재생과-7828호, 2013.06.19.)

### □ 추진경위

- 2007.11.15.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서울시고시 2007-418호)
- 2016.11.15. : 착공
- 2019.04.29. : 준공
- 2020.03.10.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 요청
- 2020.03.18.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개최

### □ 사업내용

- 위 치 : 효창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용산구 효창동 13-2번지 일대)
- 지원대상 : 도로 / 소공원
- 사업기간 : 2020.01. ~ 2020.12.
- 사업내용 : 효창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도로, 소공원)
- 집행절차 : 예산편성(시) → 재개발 사업 준공(구)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정산(구→시)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시→구)